

[별표]

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(제5조제2항 관련)

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유의사항
○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.
○ 표정으로 찬성·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.
○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평가위원 상호 간에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.
○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.
○ 평가대상자(업체)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.
○ 평가대상자(업체)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.
○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.
○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.

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공지사항
오늘 참석하신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○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입찰 참가자(평가대상 업체)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○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○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(평가대상 업체)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○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(평가대상 업체)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○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이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위 내용에 해당하는 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